

의안번호	제 56 호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상정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9월 7일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9월 7일
발의자 : 이상정, 김정일, 박봉순,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,
이의영

1. 제안이유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, 법령 내용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, 장 구분을 신설하여 도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지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. (안 제7조)
 - 위원수: (현행) 15명 이내 → (개정안) 20명 이내
 - 위원장·부위원장: (현행) 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 → (개정안)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
 - 위원에 도 거주 주민대표,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추가(각 2명 이상)
- 위원회 연임 사항 변경함. (안 제8조)
 - (현행) 두 차례 → (개정안) 한 차례
- 불필요한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함. (안 제1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- 호
- 다. 협의 : 보건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“제1장 총칙” 을 신설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보건의료서비스” 를 “공공보건의료서비스”로, “도민” 을 “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앞에 “제2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” 을 신설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 앞에 “제3장 공공보건의료위원회” 를 신설한다.

제5조 중 “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도의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” 을 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” 을 “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

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
2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대표
3.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
4.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
5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회 임기)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 앞에 “제4장 공공보건의료 지원단”을 신설한다.

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

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장 총칙</u>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u>제2조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보건의료서비스”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 2. “공공보건의료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· 계층 · 분야에 관계 없이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·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 3. 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따 	<u><삭 제></u>

<p><u>른 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<u>4. “공공보건의료기관”이란 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·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<u>5. “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</u></p>	
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 ----- 공 공보건의료서비스----- ----- 충청북도민(이 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----- 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u><신 설></u>	<u>제2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</u>
<p>제4조(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
<u><신 설></u>	<u>제3장 공공보건의료위원회</u>
<p>제5조(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)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</p>	<p>제5조(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) ----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</p>

<p><u>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	<p><u>요 사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p><u>1. 당연직 :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,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, 충북권역외상센터장, 충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, 충청북도소방본부장, 권역책임의료기관장, 지역책임의료기관장, 충북지역암센터장,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, 청주시서원보</u></p>	<p><u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-----.</u></p> <p><u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</u></p>

<p><u>건소장</u></p> <p><u>2. 위촉직 :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, 그 밖에 공공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2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대표</u></p> <p><u>3.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</u></p> <p><u>4.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</u></p> <p><u>5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
<p><u>제8조(위원회 임기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<u>제8조(위원회 임기)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2조(적용)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14조(지원단의 기능) 지원단은 다</u></p>	<p><u>제4장 공공보건의료 지원단</u></p> <p><u>제14조(지원단의 기능) -----</u></p>

<p>음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「공공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 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</p> <p>2. ~ 10.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</p> <p>2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·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16조(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관계법령 빨췌

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보건의료”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·계층·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·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2. 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
 - 나.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
 - 다. 발생 규모,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,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, 건강 증진,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
 - 라.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3. “공공보건의료기관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“공공단체”라 한다)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·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4. “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 - 가. 공공보건의료기관
 - 나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
 - 다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
 - 라.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

-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 라 한다)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
 - 마.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
 - 바.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
 - 사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,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
 - 아. 「암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
 - 자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5. “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”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 - 나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 - 다. 권역별로 설치 · 운영되며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
 - 라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

제5조의2(시 · 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)
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 · 도” 라 한다)에 시 ·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“시 · 도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② 시 · 도위원회는 해당 시 ·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2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
 3.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
 4.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
 5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- ③ 시·도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의2(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차관
2. 교육부차관
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
4. 법무부차관
5. 국방부차관
6. 행정안전부차관
7. 고용노동부차관
8. 국가보훈처차장

-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”

회” 라 한다)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의5(시 ·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 ·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시 · 도위원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 · 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·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·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 · 도” 라 한다)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해당 시 · 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
3. 해당 시 · 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
4. 해당 시 · 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
5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및 운영
- 공공보건의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

3. 관련조문

- 제7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회 수당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회의수당 추계

사업명	내 역	
	지원내용	예 산
위원회의 설치·운영	회의수당 100,000원×3회×18명*	5,400천원

*20명중 공공보건의료 담당공무원 2명 제외

나. 추계 결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27,0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출	5,400	5,400	5,400	5,400	5,400	27,000
위원회의 설치·운영	5,400	5,400	5,400	5,400	5,400	27,000

※ 정책기획관 위원회 Pool 수당에서 지금